

<별첨 1>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액면분할의 건

현 행	변 경(안)	목적
<p>5조(발행예정주식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p> <p>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주로 한다.</p> <p>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p>	<p>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p> <p>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주로 한다.</p> <p>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p>	<p>유동 주식수 확대</p>

제2-2호 의안 : 사업목적추가의 건

현 행	변 경(안)	목적
<p>2조(목적)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신규 약물전달체계 및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p> <p>2. 기능성식품 및 천연식품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업</p> <p>3. 화장품 신소재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p> <p>4.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p> <p>5.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p>	<p>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신규 약물전달체계 및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및 소재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p> <p>2. 기능성 및 천연식품과 기능성 및 천연소재의 연구개발, 제조, 소분 및 판매업</p> <p>3. 화장품 신소재의 연구개발, 제조, 소분 및 판매업</p> <p>4.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p> <p>5.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판매</p> <p>6. 전자상거래 관련업</p> <p>7. 인터넷 콘텐츠의 기획, 개발 및 컨설팅업</p> <p>8. 마케팅 기획, 컨설팅 및 서비스 대행업</p> <p>9.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p> <p>10. 경영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업</p> <p>11. 동물용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건강용품, 사료제조 및 판매업</p> <p>12. 식품등 수출입 판매업</p> <p>13. 생활용품(비누, 치약, 세제 포함)의 제조 및 판매업</p> <p>14.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p> <p>15. 위 각 호에 관련된 도소매 및 수출입업</p> <p>16. 위 각 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p>	<p>사업 목적 추가</p>

제2-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변경의 건(2023년 7월 3일 개정된 벤처기업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현 행	변 경(안)	목적
<p>10조(주식매수선택권)</p> <p>①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회사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 또는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p> <p>④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0조(주식매수선택권)</p> <p>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1인에 대하여 내줄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1. 회사의 임직원</p> <p>2.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p> <p>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p> <p>4.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p>	

현행	변경(안)	목적
<p>⑤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하고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산정은 상법 제340조의2의 제4항을 참고하여 결정한다.</p> <p>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p> <p>⑥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p> <p>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시점별 주식의 시가는 각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부여 당시 시가)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p> <p>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 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p> <p style="text-align: center;">(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은 주식의 수</p> <p>⑨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의 20 이내에서 임직원 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p> <p>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p> <p>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023년 7월 3일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전문 변경</p>
<p>부칙(2019. 5. 7.) 이 정관은 2019. 5. 7.부터 시행한다</p>	<p>부칙(2024. 3.25.) 이 정관은 2024. 3.25.부터 시행한다</p>	<p>효력발생 시기 지정</p>